2017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

산업기술생태계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의 2017년도 사업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기술혁신사업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제15조제2항에 따른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제27조에 따른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및 기술혁신주체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 등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함

1. 공통사항

– 2017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주요 R&D 제도 개선내용 –

- ◆ 정부가 기획하는 과제비중을 축소하고 민간의 창의성, 현장성이 반영된 과제 지원을 확대 (사업공모형 '15.40% → '17.60%)하여 과제기획의 개방성 강화
- ◆ 연구자 역량중심 선정을 위해 주관적 연구역량 평가지표를 객관적 · 체계적 평가 지표로 전환(주관적 정수 배점 20점 → 과제수행이력+보유기술역량 등으로 객관적 등급, 지표 30점 상향)
- ◆ 연구몰입 및 연구 지원상 강화를 위해, 과제 · 강독형 '산학조사+연차평가'를 폐지하고 워크숍 형태의 '연구 발표회(progress review conference)' 형태로 전환
  * 연구 및 사업화 관련 문제해결, 향후 연구방향에 대한 컨설팅 형태로 추진
- ◆ 총 연구기간에 걸쳐 한 번만 참여를 제공하는 일괄협약 방식으로 전환하여 신속한 사업비 지급 및 과제 착수 유도
- ◆ '연구몰입도 제고'와 '수행기관의 자율성 확보'간 균형을 위해, 연구원 최소참여율 10% 수준으로 조정(30% → 10%)
- ◆ 평가위원 2년 임기제 실시를 통해 실적정보 업데이트(매 2년)를 의무화 등 평가위원 이력 정보관리 추진
- ◆ 성과확산을 위한 후속사업 연계 강화(산업부 중기청 과제 연계 우대 및 사업비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제재 강화(5회제한 최초 10% → 5%)
- ◆ 기타, 원천기술에 대한 지원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수출촉진형 R&D 집중 지원, 연구수행 총괄책 탄력 운영, 경쟁형 R&D 활성화, 외부 기술을 활용하는 기술도입비용 인정을 R&D(Buy & Development) 도입 등

■ 추진체계
○ '컨담'기관,'리'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사업에 대한 기획 · 평가 · 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
○ '주관'기관이라 함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신청자격
○ 사업별 주요내용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4. 사업별 지원계획','2017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안내책자' 및 개별 사업 공고 참고
■ 신청방법
○ 사업별 공고 내용의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
■ 사업공고
○ 사업별 추진일정에 기반한 의료기기 분야의 핵심 · 첨단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지원을 통해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을 말함
■ 민간투입 현금부담 기준
○ 수행기관은 사업비의 일정 출연금으로 지원 받을 경우 민간부담금을 현금부담비율은 아래표를 따름. 다만, 산업별 실의하원회 심의 등을 통해 민간부담 기준을 조정할 수 있음. 또한, 해당 비율은 산업 공공 고시 과제부터 적용함

사업명	2017년도 예산(백만원)		
	신규	계속	합계
○ 자동차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17,093	53,016	70,109
– 그린카	8,400	24,656	33,056
– 스마트카	8,693	28,360	37,053

■ 추진절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자동차산업핵심기술개발	'16.9월~'16.11월	'16.12월	'17.1월~'17.2월	'17.2월~4월	'17.5월

(8) 전자부품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 디스플레이 (IT융합) 주력산업 분야의 IT융합 핵심 · 원천기술 개발을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 및 미래 신산업 육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
■ 융복합디스플레이 디지털사이니지 및 웨어러블 · 자동차 · 건축 · 의료 디스플레이 등 융복합 시스템 부품소재 및 장비기술 개발 · 전시 등을 담당했으로써 다양한 기능의 부가된 제품으로 기존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융복합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 지능형센서
○ 자동차(ADAS 기술), 건강, 안전,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는 지능형 센서 기술 개발
○ 글로벌 수요연계 시스템반도체 및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개발
■ 지원내용

구 분	지원내용
제조업과 서비스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화 핵심기술과 제조업과 서비스 융합 관련 기술
서비스 산업 융합	서비스산업 고도화, 서비스 산업간 융합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산업 창출 기술
기반기술 활용화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기반기술 개발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로봇산업기술개발사업	'16.9월~'16.11월	'16.12월	'17.1월~'17.2월	'17.2월~4월	'17.5월

■ 추진절차

사업	과제기획	지정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섬유생활스트림	'16.10월~'16.11월	'16.12월	'17.1~2월	'17.3월
해양융복합스퍼	'17.1월	'17.1월~'17.2월	'17.2월 ~ 3월	'17.3월
물없는화공산업육성사업	–	35억원	–	35억원
합계		206.85억원	220.87억원	427.72억원

■ 추진일정

구분	과제기획	지정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섬유생활스트림	'16.10월~'16.11월	'16.12월	'17.1~2월	'17.3월
해양융복합스퍼	'17.1월	'17.1월~'17.2월	'17.2월 ~ 3월	'17.3월
물없는화공산업육성사업	–	35억원	–	35억원
합계		206.85억원	220.87억원	427.72억원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조선해양산업핵심기술개발	'16.9월~'16.11월	'16.12월	'17.1월~2월	'17.2월~4월	'17.5월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제조기반산업시스템	'16.9월~'16.11월	–	–	'17.5월~'17.6월	'17.6월~12월
연구장비	–	–	–	'17.2월~'17.2월	'17.3월~4월
합 계					'17.5월

※ 제속과제 지원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음, 계속과제에서 전차에선 발생 시 신규과제 공고 예정

■ 기술료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을 따르며, 기술료율,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식에 대해서 사업별 공고시 별도 안내

■ 지원제외
○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 및 중 이용
– 공고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 내용이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기술 유사성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당해 사업 수행 의무사항(주요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폐지 제출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정부출연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 불이행 및 부실위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기타 사업별 공고 참조
■ 디자인과 사업기술혁신사업과의 연계
○ 사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개정, 제7장 제10조 제2항, 제3호으로 제정돼 등의 규정에 따라 사업기술혁신사업 디자인 융합 방식을 통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역량강화 및 사업 의사결정자 및 실무자 간 의사소통 촉진
○ '연구몰입도 제고'와 '수행기관의 자율성 확보'간 균형을 위해, 연구원 최소참여율 10% 수준으로 조정(30% → 10%)
○ 평가위원 2년 임기제 실시를 통해 실적정보 업데이트(매 2년)를 의무화 등 평가위원 이력 정보관리 추진
○ 성과확산을 위한 후속사업 연계 강화(산업부 중기청 과제 연계 우대 및 사업비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제재 강화(5회제한 최초 10% → 5%)
○ 기타, 원천기술에 대한 지원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수출촉진형 R&D 집중 지원, 연구수행 총괄책 탄력 운영, 경쟁형 R&D 활성화, 외부 기술을 활용하는 기술도입비용 인정을 R&D(Buy & Development) 도입 등
■ 관련 법령 및 규정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각 사업별 공고문과 아래의 법령, 요령 및 평가관리지침을 따름
○ 법령(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에너지법, 소재 · 부품전문기업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기타 근거 법령
○ 요령,고시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지역산업육성사업 공통운영요령, 산업기술개발정책의 통합관리요령
○ 평가관리지침(제/폐/변)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사업화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지역산업자립화사업 평가관리지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2. 2017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시행계획 공고 안내자료

◆ 2017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주요 사업내용을 정리한 사업 안내 자료 및 정부 R&D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 누구나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는